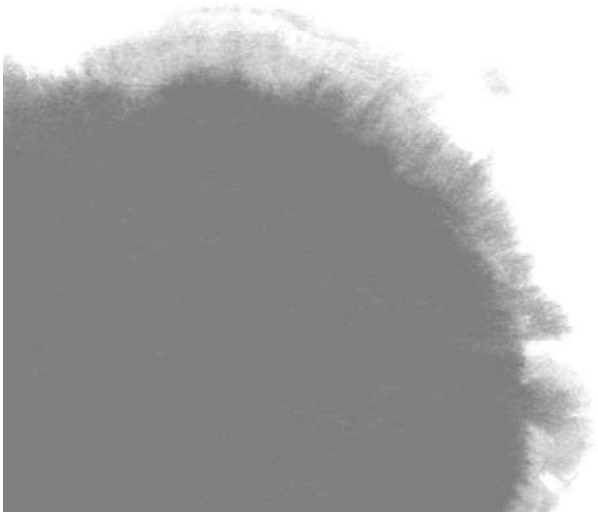
06

질적자료 분석



제6장 질적자료 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방법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 및 방향, 구성요소를 위해 현재 아동영향평가를 시행 중인 지자체, 아동영향평가 전문가,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토론회를 진행

-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수단 및 방법, 아동영향평가 제도 효과성,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기여 및 한계점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결과 도출. 아동 심층 토론회는 만 10~11세 어린이의회 의원과 학교밖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20일~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40일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학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심층면담을 진행함.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의 충실성을 위해 면담 1주일 전 핸드폰 문자메세지, e-mail 등을 통해 면담 내용을 미리 공지함. 면담이 끝난 후, 면담과 관련된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한 전화나 e-mail을 통해 재면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함

○ 아동영향평가 관련한 공무원, 아동, 행정, 법학, 학계 및 현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함. 면담내용은 주제별 주요의견으로 면담 내용은 2개의 녹음기로 녹취하고 동시에 속기화 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면담 질문을 중심으로 발언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전사된 내용은 자료로 문서화함. 자료분석을 위해, 면담 시 녹음과 기록했던 내용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어 핵심범주와 하위범주를 체계적으로 연관 시켜 귀납적 범주로 분석함.

분석 자료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교수 1명과 행정학과 교수 1명, 박사학위를 소지한 법학 관련 현장 전문가 1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신뢰성을 보장받고,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서 범주를 명료화함

〈표 6-1〉 아동영향평가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 - 아동영향평가의 방향 - 아동영향평가의 범위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수단 및 방법	-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 아동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4대 아동권리) - 아동영향평가의 구성요소(계획, 목적, 대상, 기준, 항목,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평가심의 및 조정, 평가활용) - 아동영향평가 진행 시점 - 아동영향평가 도출 방법: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내용 또는 보고서)에서 아동권리(4개 권리 등)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또는 있게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아동영향평가 대상, 방식, 기준, 결과도출 등 - 아동영향평가 심의 및 조정 방법 - 아동권리 모니터링 유무 및 방법
아동영향평가 제도 효과성	-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성 - 아동영향평가의 결과 활용 - 아동영향평가 효과성 및 정합성 검증: 1)아동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 또는 평가 방법), 2)아동영향평가에서 관련 집행부의 정책 등에서 실제 아동의 권리가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조치 및 관리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기여 및 한계점	-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기여 -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점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이를 통해 조례 목적 및 구성요소(안)와 정책 및 행정적 고려사항 등을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함

〈표 6-2〉 워크샵 형식 아동 심층 토론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권리의 개념 - 아동영향평가의 의미
아동영향평가 목적 및 방향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 - 아동영향평가의 정책의 방향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방법	-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제2절 분석 결과

1.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1) 전문가 참여 현황

〈표 6-3〉 전문가 참여자 현황

순	참여자	성별	직업	경력	비고
1	AOO	남	사회복지공무원	4년	아동청소년전공 박사
2	BOO	여	사회복지공무원	3년	_
3	COO	남	아동보호전문기관장	24년 8개월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4	DOO	남	청소년자치연구소 국장	5년 8개월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5	EOO	남	행정학과 교수	4년 8개월	행정학 박사
6	FOO	남	행정연구소 대표	9년 3개월	행정학 박사
7	GOO	남	변호사	4년 1개월	도의회 법률 자문위원

2) 심층면담 질문 구성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아동영향평가이 목적, 연령, 항목, 구성요소, 진행시점, 결과도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4〉 전문가 심층면담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아동영향평가 목적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연령	아동영향평가 시, 아동의 연령 범위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항목	아동권리를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구성요소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진행시점	아동 관련 법·조례 제도, 사업 등 아동영향평가를 진행 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결과 도출	아동영향평가 결과 도출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확인 및 평가	아동영향평가가 확인과 평가에 대한 견해
아동영형평가 평가 활용방법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활용 방법 견해
아동영향평가 심의 조정	아동영향평가 심의 및 조정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 모니터링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전문화에 대한 견해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성	아동영향평가 전문성에 대한 견해
동영향평가 조례 수정	현재 아동영향평가 조례 수정 필요 부분에 대한 견해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제도를 포함여부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제도를 포함 또는 분리 여부 견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견해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여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의 영향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내용)(보고서)에서 아동권리(4개 권리 등)영향 파악 견해
아동영향평가 사후관리	아동영향평가에서 관련 사후조치 및 관리에 대한 견해

3) 심층면담 내용 분석

(1) 아동영향평가 목적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해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를 통해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맥락적으로 알 수 있음. 또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여 사회 내 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에 정책의 의의를 두고 있음.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AOO, 2020.10.16.)

[사례2]

아동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은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UN의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무차별 원칙,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존 및 발달 보장이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4대 기본권과 정책 등을 통해서 보다 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OO, 2020.10.16.)

[사례3]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여 사회 내 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에 아동영향평가 목적으르 생각할 때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단순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복지 이상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FOO, 2020.10.10.)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맥락적으로 알 수 있음. 또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여 사회 내 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에 정책의 의의를 두고 있음

(2) 아동영향평가 연령

○ 아동영향평가의 연령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남. 아동영향평가 연령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0~18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민법」 미성년자 기준 만 2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내용도 있었으며, 아동영향평가 연령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이 제도에서 연령의 범위를 정할 때, 우선 이 제도가 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인 만 18세 미만,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까지를 아동영향평가 시, 아동의 연령범위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GOO, 2020.10.10.)

[사례2]

정책대상 내 아동이 포함되는 지역 내 모든 입법활동,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을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만 20세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FOO, 2020.10.10.)

(3) 아동영향평가 항목

○ 아동권리를 평가하는 항목의 정함에 있어 다수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최우선의 이익, 비차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소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응답하기도 함. 아동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동최우선의 이익 경우 보호권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차별의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FOO, 2020.10.10.)

(4) 아동영향평가 구성요소

○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 '연간계획과 실시계획, 평가목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심의 및 조정, 평가활용 필요'로 응답. 반면 소수 의견으로 '평가항목과 평가결과, 평가심의 및 조정 불필요', '평가활용 불필요'로 응답함. 아동영향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는 3~5년간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필요하며, 평가의 세부목표는 물론, 궁극적 목표까지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FOO, 2020.10.10)

[사례2]

아동영향평가의 평가심의기구 구성이나 심의회의 운영, 조정 철차 등의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환류는 평가과정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용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FOO, 2020.10.10)

[사례3]

대상이 명확하게 표기해야 정확한 정책 대상을 알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제시해 주되, 양적인 방식 외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질적 방식의 평가 기준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활용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DOO, 2020.10.21.)

[사례4]

계획은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되고, 효율적인 추진 및 원활한 관련 기과나 협조를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관한 주기적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구체적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을 계획으로 제시하여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피드백 할 수 있는 기반과 과정에서 필요합니다.(EOO, 2020.10.21.)

(5) 아동영향평가 진행 시점

아동영향평가의 진행 시점은, '사전·사후 > 아동 관련 신규 사업마다, 5년 등의 아동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 연 1회 예산 및 사업 수립 시', '아동관련 조례 제정 시'로 응답. 그 외 기타 의견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 분석 평가'로 응답. 아동영향평가의 진행 시점에 대한 전문가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제도가 최대한 결과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영향평가와 아동 관련 신규 사업이 나올 때 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년 등의 아동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기존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AOO, 2020.10.10.)

[사례2]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사후/아동 관련 신규 사업마다/아동관련 조례 제정 시/5년 등의 아동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시가 필요합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사전에 미리 예방적 제도이기도 하며 중간 중간에 신규 사업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BOO, 2020.10.16.)

(6) 평가결과 도출

○ 평가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 절반정도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한 아동권리 영향정도 분석'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사전·후 영향평가 반영 정도', '예산 및 사업, 조례 투입 결과를 통한 산출과 성과 분석'으

로 응답함. 평가 도출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예산 및 사업, 조례 투입 결과를 통한 산출과 성과 분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한 아동권리 영향정도 분석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AOO, 2020.10.16.)

(7) 아동영향평가 확인 및 평가

○ 아동영향평가의 확인 및 평가는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 등의 설문 평가'로 응답,'아동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한 평가'라고 응답. 아동영향평가 확인 및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준비과정에서는지 자체 특성에 맞는 아동영향평가 확인 및 평가방식을 지정하여 아동영향평가를 과/팀에서 준비해야하며 아동영향평가 기관, 위원회, 참여기구에서 평가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OO, 2020.10.16.)

[사례2]

아동영향평가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영향평가에 관련된 분들로 인해서 평가를 해야 객관적인 결과 도출에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 등 설문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BOO, 2020.10.16.)

[사례3]

아동영향평가는 당해 정책을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FOO, 2020.10.10.)

(8) 아동영향평가 평가 활용 방법

○ 아동영향평가 활용 방법에 대해 '정책 등에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 '개인 및 조직에 인센티브'라고 응답. 아동영향평가 평가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개인 및 조직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또는 가해지는 불이익, 예산 삭감 등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 등 정책 등에 활용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활용방법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AOO,2020.10.20.)

(9) 아동영향평가 심의 및 조정

○ 아동영향평가의 심의 및 조정 주체는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아동권리 전문가','정책평가 전문가'라고 응답

(10) 아동권리 모니터링

○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해 대부분이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명 중 2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 4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 1명은 '그렇다'라고 응답).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가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이 전무하고 수행경험이 없다보니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AOO,2020.10.20.)

[사례2]

아동권리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워크숍, 정책제안 토론회 등에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BOO, 2020.10.18.)

[사례3]

권리와 복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단순히 조례 준수 등 합법성만을 판단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FOO, 2020.10.10.)

[사례4]

지자체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장자치단체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구축되어야 하고, 보육, 복지, 주거, 가족,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EOO, 2020.10.20.)

11) 아동영향평가 전문성

○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성에 관해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등의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 활용',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가 활용', '아동의 참여권 증진과 소통을 통한 정책 참여'이라고 응답.

12) 아동영향평가 조례 수정

○ 현재 아동영향평가 조례에 수정이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 '아동들의 의견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예산반영', '적절한 평가 및 환류과정으로 아동복지 정책 발전 도모'로 응답. 아동영향평가 조례 수정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제2조 3항"아동영행평가"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적(아동인권)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중간 과정 등의 실행에서 분석하고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5항 "옴부즈 퍼슨"이라는 용어도 다시한번 우리말로 정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FOO, 2020.10.10.)

[사례2]

현재의 정책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권 보장과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아동들의 제안을 많이 들어 봄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COO,2020.10.21.)

[사례3]

아동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관련, 아동영향평가 시행 관련,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 관련,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EOO, 2020.10.20.)

13)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포함 여부

○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제도의 포함 여부와 근거에 대해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분리·구별',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 '장단점이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함. 아동영향평가를 별도로 분리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이 조례에 대한 강조와 강력한 조치를 위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고,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행정 수행의 편리성, 용이성 등의 내용이 반영됨을 맥락적으로 알 수 있었음. 다만, 조례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자칫,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이고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아동친화도시와는 구별하여 별도의 조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임. 아동영향평가 조례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포함될 시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들이 아동영향평가에 대하나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나, 유니세프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칙의 하나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수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EOO, 2020.10.20.)

[사례2]

아동영향평가 내용이 적절히 조항으로 포함된다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나 아동영향평가 조례에 포함하는지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AOO, 2020.10.20.)

[사례3]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분리·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OO, 2020.10.16.)

[사례4]

처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동친화도시 조례 안에 아동영향평가제도를 넣는 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독으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조례와의 내용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DOO, 2020.10.20.)

1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 활용

○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에 있어 개인 및 조직에 인센티브 및 불이익, 정책 등에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해 '아동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 '시행규칙 또는 세부규정에 별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도 나타나,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개인이나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을 거 같으며,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OO, 2020.10.16.)

[사례2]

결과 활용에 대한 개인 및 조직에 인센티브, 불이익 없고, 아동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상부서에서 조례(규칙) 및 사업(정책)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BOO, 2020.10.16.)

[사례3]

아동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좋겠지만, 명예를 높여주거나 자신감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DOO, 2020.10.21.)

[사례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필요로 하나, 이것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시행규칙 또는 세부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FOO, 2020.10.10.)

[사례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하여 개선 조치 및 개선안 마련과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보완 및 개선 요구와 개선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과정과 구체적이고 적법한 양질의 평가 방식을 공유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COO, 2020.10.21.)

[사례6]

사업의 결과 및 성과, 과오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제공은 필요하나 그 정도는 타 제도와 비교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GOO, 2020.10.25.)

15)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해 '아동권리전문가 구성'이라고 생각, 기타의견으로 '아동권리 정책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구체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구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위원을 평가 시 에만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까지 공무원이 해야 하는 평가업무가 많음. 공무원뿐 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직접 평가해보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AOO, 2020.10.16.)

[사례2]

아동정책에 대해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인권 및 복지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율은 10%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OO, 2020.10.10.)

[사례3]

아동, 청소년 전문가 뿐 아니라, 영향 평가에 자문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한 선발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간 활동하고 실제 내용을 아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DOO, 2020.10.21.)

[사례4]

지자체의 현행 정책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정책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권리

전문가 그룹과 정책의 시행자들, 더불어 아동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자발적 시민 사회단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COO, 2020.10.21.)

[사례5]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평가, 아동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의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구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EOO, 2020.10.20.)

[사례6]

평가위원회 단계에서 직접당사자인 아동들의 참여 방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동의 의견반영 창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GOO, 2020.10.25.)

16) 아동영향평가결과 영향

○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내용)(보고서)에서 아동권리(4개 권리 등)에서의 영향에 대해 '평가기준을 만들어 아동권리 여부 측정', '아동의 의견수렴 여부 등,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 여부', '아동의 4대 권리'와 관련하여 응답. 아동영향평가결과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아동권리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AOO, 2020.10.16.)

[사례2]

해당사업(계획, 조례)이 1)UN아동권리협약, 2)어린이·아동·청소년 법규,3)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 여부,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고려여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아동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아동의 의견수렴 여부 등,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BOO, 2020.10.16.)

[사례3]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해서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권리보장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판단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FOO, 2020.10.10.)

[사례4]

성북구, 강서구, 군산시, 완주군 등 기존의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영향평가 보고서와 민간 NGO 보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제안으로는 최근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부분 또한 아동의 4대 권리와 더불어 평가 되어져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COO, 2020.10.21.)

17) 아동영향평가 사후관리

○ 아동영향평가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반영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 '평가결과 사후조치와 현황자료 제출 절차 고려', '아동권리 감소에 대한 대응에는 민감하지 않다'라고 응답. 아동영향평가 사후관리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부서별 공문을 송부하여 사후조치 이행관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AOO, 2020.10.16.)

[사례2]

사후대책 마련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평가결과의 환류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결과의 사후적 조치와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EOO, 2020.10.20.)

[사례3]

현재 아동영향평가에서 실제 아동권리의 감소에 대한 대응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FOO, 2020.10.10.)

[사례4]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권고안반영회신서(반영결과제출서)를 받아 반영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BOO, 2020.10.16.)

18) 기타 의견

○ 그 밖의 의견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아동영향평가를)공무원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권리모니터링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AOO, 2020.10.16.)

[사례2]

최근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아동학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아동의 보호 문제와 정신 건강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적인 정책 대안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대책 중심이여서 장기적인 실효성을 가진 대안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 내의 실질적인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이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DOO, 2020.10.21.)

[사례3]

아동기본정책 방향에 포함되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부분과 아동의 보호권의 충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요구되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 현재 소수의 민간단체 중심의 움직임만 감지되는 현실에서 감시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노력과 관리 방안이 요구되어집니다.(COO, 2020.10.21.)

○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목적에서는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연령의 범위)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준한 0-18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함. 또한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었으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에서는 다소 의견차가 있었음. 즉, 아동영향평가의 전문화와 아동권리 보장적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행정의 편리성과 용이성 등을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례 안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다만,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및 절차와 과정 등이 더 명확해야 될 것이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청소년자치연구소 국장, 행정학과 교수, 행정연구소 대표, 법학전문가 등 7명의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6-5〉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구분	심층면담 결과
1. 아동영향평가 목적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2. 아동영향평가 연령	「아동복지법」에 따른 0~18세
3. 아동영향평가 항목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최우선의 이익, 비차별
4. 아동영향평가 구성요소	연간계획과 실시계획, 평가목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심의 및 조정, 평가활용 필요
5. 아동영향평가 진행시점	사전·사후〉 아동 관련 신규 사업마다, 5년 등의 아동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연 1회 예산 및 사업 수립 시', '아동관련 조례 제정 시' 등
6. 아동영향평가 결과 도출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한 아동권리 영향정도 분석, 사전·후 영향평가 반영 정도
7. 아동영향평가 확인 및 평가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 등의 설문 평가
8. 아동영형평가 평가 활용방법	정책 등에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
9. 아동영향평가 심의 조정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
10. 아동영향평가 모니터링	잘 이루어지지 않음(경험 부족, 정책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 미비)

구분	심층면담 결과
11.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성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등의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 활용
12. 아동영향평가 조례 수정	'아동들의 의견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예산반영', '적절한 평가 및 환류과정으로 아동복지 정책 발전 도모'
13.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제도를 포함여부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와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	아동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15.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아동권리전문가가 구성과 아동권리 정책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구체화 고려
16.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의 영향	1)UN아동권리협약, 2)어린이·아동·청소년 법규, 3)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 4)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5)비차별, 6)아동 최우선의 이익, 7)아동의 의견수렴, 8)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안내, 9)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 여부 등을 파악
17. 아동영향평가 사후관리	권고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반영여부를 관리, 평가결과 사후조치와 현황자료 제출 절차 고려, 아동권리 감소에 대한 대응에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관리 미비

2. 아동 심층 토론회 결과

○ 2020년 10월 31일,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만 10~11세 어린이의회 의원과 학교밖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본 연구에서 사용한 Q방법론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의 관점을 좀 더 단순하고 시각적으로 문자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음

○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심층토론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권리 내용을 기초로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아동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 및 심층토론회를 가짐.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정책 관련 제도 현황 및 실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과 향후 제도 마련 방안을 구안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함. 아동 심층토론 주요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6-6〉 아동 심층 토론회 참여 현황

순	참여자	학력	연령	비고
1	A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	B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3	C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4	D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학교밖 아동
5	E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6	F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학교밖 아동
7	G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8	H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학교밖 아동
9	I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학교밖 아동
10	J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학교밖 아동
11	K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12	L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13	M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14	N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15	O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16	P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학교밖 아동
17	Q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18	R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학교밖 아동
19	S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0	T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학교밖 아동
21	U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2	V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23	WOO	초등하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24	XOO	초등학교 6학년	만 11세	어린이의회 의원
25	Y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6	ZO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학교밖 아동
27	AA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8	BB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29	CCO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	어린이의회 의원

○ 워크샵 형식의 심층 토론회는 아이스 브레이킹 및 참가자 공유로 **시작하여**,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주제 **강연**, 아동권리 OX **퀴즈**, 상호토론은 아동권리와 부당한 대우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아동권리와 정책과 제도 관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함**

○ 심층토론 주요 주제는 '아동의 권리', '아동영향평가란?',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분임 별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논의로 의견을 나눠 주제별 검토 내용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과 분임 토의, 마지막 총평까지 아동들의 심층적인 면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표 4-4〉 아동 워크샵 형식 심층 토론회 주요내용

구분	시간		주요내용
준비	9:00 -9:30	30	· 참가자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 브레이킹 및 참가자 모듬 구성
	9:30 -10:20	50	· 주제 강연 -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 아동 권리 OX 퀴즈 · 1부 상호토론(아동권리 vs 부당대우)
휴식	10:20 -10:40	20	· 휴식 및 상호 소통
활동	10:40 -11:40	60	· 2부 상호토론(이슈페이퍼를 통한 생각 모으기)
			· 놀이와 활동을 통한 마음열기&친밀감 쌓기
			·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권리
			· 생각 모으기(아동영향평가란?)
			· 조별 생각 정리하기(아동영향평가 제도의 방향과 방안)
마무리	11:40 -12:00	20	· 소감나누기(질의 답변) · 총평 및 기념촬영 · 폐회

○ 심층 토론회 결과 아동은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동들은 인식 면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자유', '권리', '행복',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자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도 평등권, 권리와 존중, 놀이, 배려, 의무 등의 키워드도 도출됨



[그림 6-1] '아동 권리' 대한 아동의 인식: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1) 아동권리의 의미

○ 아동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 아닌, 나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또한 아동권리에서 '비차별'과 '평등'의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 할 때 아동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맥락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음

[사례1]

내가 원하는 권리도 있지만 타인의 권리도 있어요. (만 10세 아동, SOO)

[사례2]

놀 권리, 여가 생활등 의 보장을 위한 권리, 체험할 수 있는 권리, 보호될 권리,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권리라고 생각해요. (만 11세 아동, ROO)

[사례3]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아동권리라고 알고 있어요.(만 11세 아동, WOO)

[사례4]

어리다고 차별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엄마한테 동생하고 차별 당할 때, 그때가 제일 속상했어요(만 10세 아동, COO)

[사례5]

최근에 엄마랑 다른 이모들이랑 커피숍에 갔는데, 노키존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좀 무시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만 10세 아동, ZOO)

(2)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 아동들은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초기 인식은 매우 낮았지만, 워크샵 형식의 심층 토론을 통해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 상호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임. 아동은 아동정책에 대해 좀 더 쉽고, 구체적인 안내와 정보를 받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주변환경과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있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맥락적으로 알 수 있었음

[사례1]

아동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느끼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이 있구나 알게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만 11세 아동, UOO)

[사례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설명들을 해 주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만 11세 아동, TOO)

[사례3]

뭔가 단어가 좀 어렵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찾아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것 같아요. (만 10세 아동, AOO)

[사례4]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더 보호받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이 영향평가 같아요(만 10세 아동, BOO)

[사례5]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동권리나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이들이 오늘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만 10세 아동, JOO)

(3)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방향

○ 아동들은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비차별', '평등', '안전과 보호', '참여권' 등을 강조하였음. 또한 앞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에서 아동권리를 '자유'로 인식한 것과 달리, 자신들의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 보다도 사회규범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에 대한 권리 등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음을 맥락적으로 알 수 있었음

[사례1]

남녀차별, 나이 차별로 인한 제약들이 없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로 인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과 우리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나 자리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만 11세 아동, AOO)

[사례2]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등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10세 아동, DOO)

[사례3]

아동이 최우선이 환경, 아직은 어리기에 혼자서 노력하고 바꿔도 안되는 부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만 10세 아동, COO)

[사례4]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시 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또 그런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만 10세 아동, DOO)

[사례5]

우리 주변에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법이나 비슷한 것을 만들 때는 그게 정말 맞는지 장애면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고, 어떤지를.(만 10세 아동, IOO)

○ 아동들은 종합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정책에 대한 주체적 지위를 요구함(성인들이 자신들을 어리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닌 한 존재로서 인식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피력함. 또한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이 직접 참여함을 원칙으로 정책 계획 및 수립, 반영을 요구), 이를 위해 너무 어렵게 설명된 정책자료나 정보를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나 내용으로 안내할 것을 이야기 함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배려와 정책이 요구됨. 정책 평가의 경우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관해 직접적 소통을 요구함. 아동정책 설계부터의 '아동의 참여권'을 재차 강조함.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아동과 성인 모두 인지 부족으로 느낌.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한 모두의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함. 아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 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성인과 아동, 지역사회 모두의 인식과 실행이 요구되는 것을 맥락적으로 알 수 있었음

○ 다음 그림은 아동 심층토론회를 통한 산출물 등의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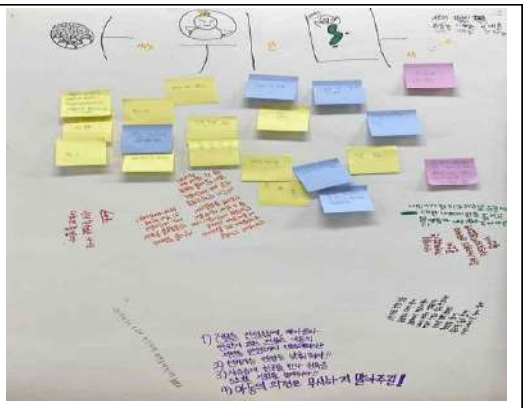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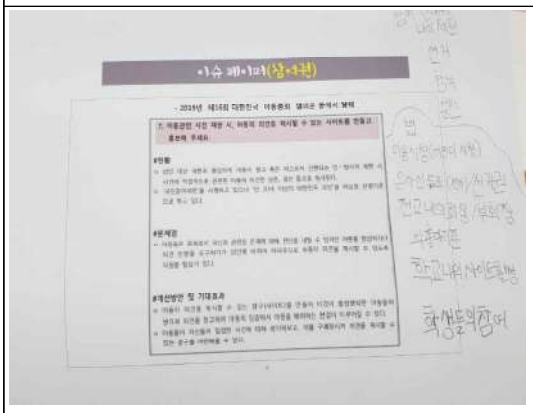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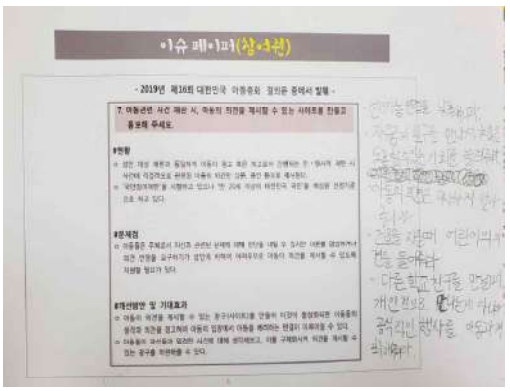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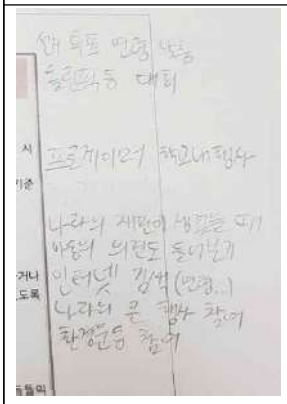
[그림 6-2] 아동 심층 토론회 산출물 등 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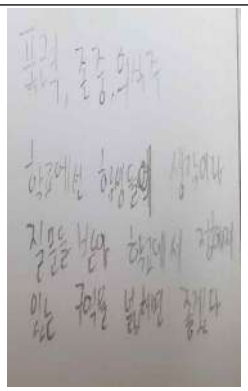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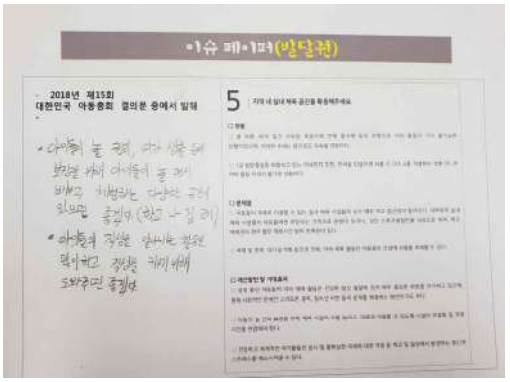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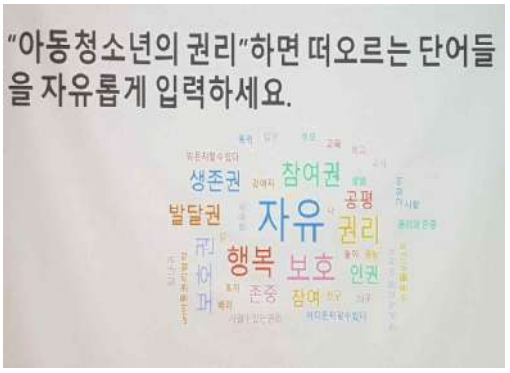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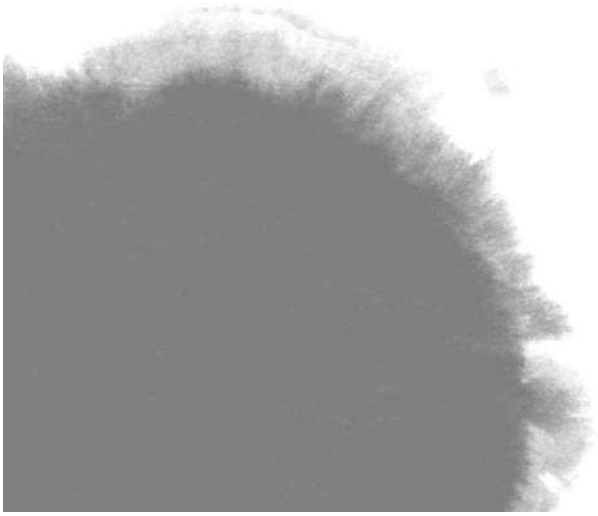




[그림 6-3] 아동 심층 토론회 산출물 등 자료(2)

07

아동영향평가 조례(안) 제언 및 결론



제7장 아동영향평가 조례(안) 제언 및 결론

제1절 아동영향평가 조례 목적 및 구성요소(안)

○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 이에 아동의 삶을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대두.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외에도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영향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근거를 마련한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19.3.23)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아동의 욕구와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당초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제도 필요로 본 연구 내용은 안정적 제도 정착과 아동권리 증진의 의의가 있음

○ 본 연구 목적은 전라북도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해 각종 문헌 및 조례제정 실태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입법 발의를 목적으로 함

○ 문헌자료로 국내외 아동복지 정책 및 현황 자료 수집 분석하였고, 질적자료 분석으로 아동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심층 면담 및 아동 심층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 도출, 아동영향평가 관련 문헌 및 제도 분석, 질적자료 분석 도출 결과,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조례(안)는 다음과 같음

〈표 7-1〉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11조2(아동정책영향평가)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비차별 : 일반아동 뿐 만 아니라 장애아동, 소수인종의 아동까지 차별 없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바. 아동 최우선의 이익 : 아동의 이익은 도시 행정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고, 기존의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학교, 보육센터, 발달센터 등)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사후, 중간 과정 등의 실행에서 분석하고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영향평가”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브즈퍼슨”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무원 등”이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하고,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및 아동의 이해관계자 등이 아동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아동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회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4조(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시·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도지사가 인허가 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5. 도지사가 전라북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아동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범위)	도지사는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제반 권리에 대한 영향 2. 아동 및 아동 내 특정 유형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유무 3.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수준 4. 아동 관련 상위법 또는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갈등 유무 5. 그 밖에 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영향평가서 작성	① 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및 검토)	1.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 기초자료, 아동영향평가 연례 기초평가서 2. 영향평가 담당부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②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이 아동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와 아동,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여부 및 반영의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정도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정도와 아동 및 아동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의 이행 여부 등 아동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7조(아동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에서 심층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아동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두 차례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모든 분야의 부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아동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향평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영향평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이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옴브즈퍼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옴브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도지사가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옴브즈퍼슨은 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제 공무원, 0000 등으로 위촉 한다. ③ 옴브즈퍼슨의 임기는 0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브즈퍼슨은 임기 종료 전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 등의 제정)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조의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 연구 방안

○ 아동영향평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 조례, 정책, 사업, 프로젝트 등이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사후, 중간과정 등의 실행에서 분석하고 평가 및 환류(feedback)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 등을 반영하는 제도임. 아동영향평가에서 초점은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의 관점이 아닌, 정책의 단순 성과나 목표지향성을 떠나 아동권리적 요소들과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해야 함.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무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아동의 생존 및 발달, 참여의 4대 원칙을 제시함.

○ 국외 아동영향평가는 EU국가가 선도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각 나라의 법령을 통한 아동 관련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단,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자체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UN(2020)에서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아동 영향 관련 UN 정책 권고사항(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을 발표하여, 아동에 대한 빈곤, 학습, 위협, 안전과 이에 대해서 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고함

○ 특히, UNICEF(2020)는“어린이를 위한 AI 정책 지침(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발표함. 아동에게 인공 지능(AI)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으로 챗봇 및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구동 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한 동영상, 뉴스, 음악, 채팅 등 인공지능(AI) 사이에서 아동의 삶과 웰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이 긴요함. 아동 인공 지능(AI) 시스템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아동의 교육을 돕고 개발 할 것이며, 아동용 설계로 건강에 더 나은 기여와 아동을 위한 결과를 반영 할 것으로 질병 진단 및 COVID-19 등 감지 방법이나, 감성적인 AI 친화형 아동 지원과 아동의

영향에 있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의 성취 지원에 대한 기술 권장

○ 「아동복지법」 시행('19.3.23)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영향평가의 도입 및 시행은 미미한 편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시범 운영 중인 단계임

○ 아동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모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이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조례로 구성함. 이는 자칫 획일화 되고, 인증 획득을 위한 아동영향평가로 전락하여, 실제 아동권리와 복지 증진 등의 정책 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조례와는 분리하여 '아동영향평가' 별개의 조례로 구성,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 및 이해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잦은 인사, 전문성, 경험 등의 부족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성·효과성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동영향평가 업무를 수행 할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개발과 개인 및 조직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아동의 주요 이슈 등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 및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하고, 이러한 사항 등을 아동영향평가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등 타 영향평가 조례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함. 뿐 만 아니라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아동 빈곤, 학습, 위협, 안전 등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반영한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 복지 증진,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 방안 등의 후속 연구도 시급함

○ 마지막으로 아동에 관한 영향은 각 사업 및 부서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아동영향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효과성을 위해서 간결하고 편리하며, 양질의 측정 가능한 아동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측정 도구, 매뉴얼 등의 체계적인 지침이 요구됨.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구성요소와 관련된 정책적 제도 및 행정적 절차를 위한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긴요함

참고문헌

김은정, 이상정, 박신아, 김주일 (2018).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2016).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세종: 보건복지부.

박영균, 장승원, 조홍식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9.01.22.).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입한다. 보건복지부 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491에서 2020년 8월 1일 인출.

서영미 (2017). 영유아권리에 기초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적용.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2(2), 383-407.

세이브더칠드런 (2020). 코비드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글로벌 서베이 한국 결과 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오주환 (2020). 어머니 방임·돌봄 공백 사각지대… 초등생 '라면 형제' 비극 불렀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764 에서 2020.9.18. 발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cfc/goal에서 2020년 11월 10일 발췌.

이혜경 외 (2018).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병렬, 서영미 (2019). 아동복지를 위한 행정의 효율적 통합관리 방안: 국회 연구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장민영 (2019).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최순종, 신명철 (2012).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방안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9(3). 77-94.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231-254.

A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20). https://www.acf.hhs.gov/에서 2020년 11월 23일 발췌

Children 's Bureau (2020). https://www.acf.hhs.gov/cb에서 2020년 11월 23일 발췌

Committ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on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Danigelis, N. L., Dickinson,

J., Elliott, C., Farley, J., Gayer, D. E., Glann, L. M., Hudspeth, T. R., Mahoney, D. F.,

McCahill, L., McIntosh, B., Reed, B., Rizvi, A. T., Rizzo, D. M., Simpatico, T., & Snapp, R. (2007). An integrative appor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 Survey and Perspectives Integrating Environment and Society, 61, 267-276.

Munro, Gillian(2014). Summary Paper on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in Scotland.

Rossi, P. H., Lipsey, M. W., & Freeman, H E,. (2004). Evaluation: A System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ylwander, Louise (2001). Child Impact Assessment; Swedish experience of

child impact analyses as a tool for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UNICEF (2020). COVID-19: Children at heightened risk of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violence amidst intensifying containment measures(https://www.unicef.org/ 20, March, 2020).

United Nations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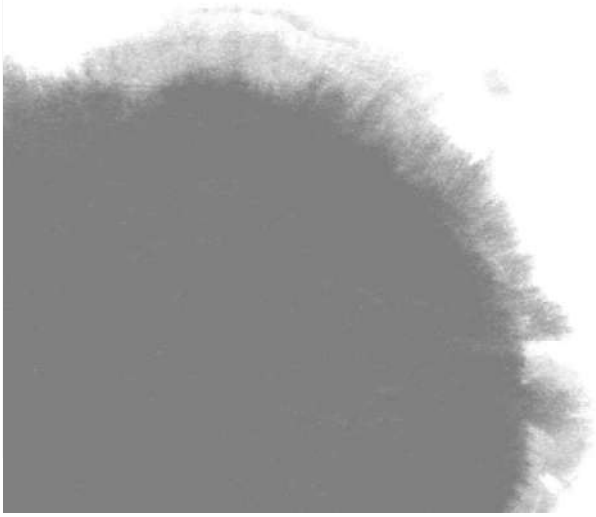
UNICEF (2020).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echnical Note.

United Nations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자료

부록 2. 아동영향평가 조례(안)



부 록

1. 심층면담 자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심층면담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회 정책용역 연구 과제인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연구**』로 아동복지정책를 위한 전라북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을 목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개발, 시범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고, 아동정책에 대한 사전·후 영향평가 등이 진행된다면 아동의 삶이 질 향상은 물론, 아동정책기본계획과의 정책적 연계성, 효과성, 일관성 등의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중한 응답은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전반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는 아래 나열된 질문들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질문지를 사전 배포합니다.
- 질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길 부탁합니다.
-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조직 및 현장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 책임연구원 : 서영미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공동연구원 : 정대현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심광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연구보조원: 최서정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10-9223-3336)

연구기관명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일반적인 사항

이 름		지 역	
소속 / 직위	소속 / 직위	담당 업무 근속연수	년 개월
학력 및 전공		핸드폰 번호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아동영향평가 조례 여부	□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포함 / □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로 구성		

※다음은 객관식(1~11번까지) 문항으로 아동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③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④ 아동 관련 법·조례 제도, 사업 등을 사전·후에 그 영향정도를 평가·개선·반영하기 위해

⑤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⑥ 기타 ()

2. 아동영향평가 시, **아동의 연령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아동복지법」에 따른 0~18세

②「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24세

③「민법」 미성년자 기준 만 20세 미만

④ 생애주기별로 초·중·고등학령인 만 6세~17세

⑤ 생애주기별로 중·고등학령인 만 12세~17세

⑥ 기타 ()

3. **아동권리를 평가하는 항목을** 어디까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중복체크 가능)

① 생존권

② 보호권

③ 발달권

④ 참여권

⑤ 아동 최우선의 이익

⑥ 비차별

⑦ 기타 (　　)

4.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위한 구성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서 필요 및 불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요소	필요 여부(체크)	그 이유(관련 의견)
① 계획 (연간계획과 실시계획)	□필요, □불필요	
② 평가 목적	□필요, □불필요	
③ 평가 대상	□필요, □불필요	
④ 평가 기준	□필요, □불필요	
⑤ 평가 항목	□필요, □불필요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불필요	
⑦ 평가 심의 및 조정	□필요, □불필요	
⑧ 평가 활용	□필요, □불필요	

5. 아동 관련 법·조례 제도, 사업 등 **아동영향평가를 진행 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중복체크 가능)

① 사전

② 사후

③ 중간과정

④ 아동 관련 신규 사업 마다

⑤ 연 1회 예산 및 사업 수립 시

⑥ 아동관련 조례 제정 시

⑦ 5년 등의 아동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

⑧ 기타 ()

6. **평가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산 및 사업, 조례 투입 결과를 통한 산출과 성과 분석

②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한 아동권리 영향정도 분석

③ 사전·후 영향평가 반영 정도

④ 기타 ()

7. **아동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 또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한 평가

②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 인식 등의 설문 평가

③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 등의 설문 평가

④ 아동관련 예산 및 사업 증가 및 양질의 평가

⑤ 아동관련 정책 등의 적용 및 활용도

8.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활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해 주세요.

① 개인 및 조직에 인센티브

② 개인 및 조직에 불이익

③ 예산에 가감 등 조정 반영

④ 정책 등에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

⑤ 기타 ()

9. 아동영향평가 **심의 및 조정**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및 해당 부서

② 전체 공무원 및 행정 총괄 부서

③ 아동권리 전문가

④ 정책평가 전문가

⑤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등의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

⑥ 별도 제3의 공공감사 등의 기관

⑦ 기타 ()

10.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전문화 되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② 별로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③ 그렇다 (⇒ 그 이유는?)

④ 매우 그렇다 (⇒ 그 이유는?)

11.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가 활용

② 정책평가 관련 전문가 활용

③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등의 전문가-아동 및 이해관계자-공무원 참여기구 활용

④ 아동의 참여권 증진과 소통을 통한 정책 참여

⑤ 공무원의 아동영향평가 전문성 교육 및 훈련

※다음은 서술형(12~18번까지) 문항으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12. 현재 아동영향평가 조례에 수정이 필요한 부문들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13.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해야 될까요? 단독으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만 구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례와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분리·구별하는 이점 또는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요?

1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의 결과 활용에 있어 개인 및 조직에 인센티브 및 불이익, 정책 등에 활용(개선조치 및 개선안 마련)은 어떠한 지요?

15.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지요?

16.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내용)(보고서)에서 아동권리(4개 권리 등)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또는 있게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아동영향평가 대상, 방식, 기준, 결과도출 등이 들어간 평가보고서가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17. 아동영향평가에서 관련 집행부의 정책 등에서 실제 아동의 권리가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조치 및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18. 그 밖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아동영향평가 조례(안)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20.00.00 조례 제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11조 2(아동정책영향평가)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비차별 : 일반아동 뿐 만 아니라 장애아동, 소수인종의 아동까지 차별 없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바. 아동 최우선의 이익 : 아동의 이익은 도시 행정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고, 기존의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학교, 보육센터, 발달센터 등)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사후, 중간 과정 등의 실행에서 분석하고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영향평가" 란 전라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브즈퍼슨"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무원 등"이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하고,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및 아동의 이해관계자 등이 아동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아동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회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4조(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시·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도지사가 인·허가 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5. 도지사가 전라북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아동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범위) 도지사는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제반 권리에 대한 영향
2. 아동 및 아동 내 특정 유형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유무
3.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수준
4. 아동 관련 상위법 또는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갈등 유무
5. 그 밖에 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① 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 기초자료, 아동영향평가 연례 기초평가서
2. 영향평가 담당부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②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이 아동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와 아동,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여부 및 반영의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정도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정도와 아동 및 아동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의 이행 여부 등 아동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7조(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에서 심층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아동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두 차례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모든 분야의 부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아동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향평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영향평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이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옴브즈퍼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옴브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도지사가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옴브즈퍼슨'은 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제 공무원, 0000 등으로 위촉 한다.

③ 옴브즈퍼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브즈퍼슨은 임기 종료 전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 등의 제정)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조의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0.00.00. 조례 제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전라북도 아동복지정책 입법 발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전라북도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연구

· 연구기관명 : 호원대학교 산학렵력단
· 책임연구원 : 서영미(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공동연구원 : 정대현(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심광호(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연구보조원 : 최서정(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발 행 일 : 2020년 11월

※ 이 보고서는 전라북도의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전라북도의회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힘. 이 자료를 허가 없이 무단사용, 복제 변경, 재배포 등의 행위 시,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